

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p> <p>① <u>일반금융소비자</u>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<u>바에 따라</u> <u>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<u>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</u>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<u>소비자</u>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	<p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p> <p>① <u>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<u>바에 따릅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</u> ----- ----- <u>채무자</u> ----- -----.</p>	<p>자구수정</p>
<p>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</p> <p>① <u>금융소비자</u>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</p> <p>① ----- <u>채무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자구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1.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</p> <p>나. 「주택법」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공사</p> <p>2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대표이사</p> <p>나. 무한책임사원</p> <p>다. 「상법」에 따른 최대주주</p> <p>라.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(배우자·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)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</p> <p>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</p> <p>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는 비에 따라-----.</p> <p>< 삭제 ></p> <p>< 삭제 ></p> <p>< 삭제 ></p> <p>③ (현행 ④와 같음)</p>	<p>금소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성립 가능 요건 반영</p> <p>항 올림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⑤ (생략) ⑥ (생략) ⑦ (생략) ⑧ (생략)	④ (현행 ⑤와 같음) ⑤ (현행 ⑥과 같음) ⑥ (현행 ⑦과 같음) ⑦ (현행 ⑧과 같음)	
제8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① (생략) 1.~3. (생략) 4. <u>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,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</u>	제8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</u> ----- -----	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일부 삭제
제10조의2(할부거래법상 철회·항변권 안내)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·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(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·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<u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</u> 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.	제10조의2(할부거래법상 철회·항변권 안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근거법 변경으로 수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</u> 제19조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<p>제13조 (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)</p> <p>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,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,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,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<u>채권과를</u>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,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13조 (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)</p> <p>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<p>자구 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p>-----</p> <p><u>채권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<p>제19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19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<p>불공정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약관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만,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</p>	
<p>제25조 (약관·부속약관 변경)</p> <p>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<u>변경하고자 할 경우,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서,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서, 이를 알려야 합니다.<단서 신설></u></p> <p>< 신설 ></p>	<p>제25조 (약관·부속약관 변경)</p> <p>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<u>변경할 경우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권고(명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.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<p>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,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</p>	<p>약관 변경 관련 통지기한 및 방법 변경(예외신설)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(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)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③ (현행 2항 내용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 3항 내용과 같음)</p>	